

1. 개정이유

학습보조비등을 환수하는 경우 이자를 가산하여 환수하고, 체납자에 대하여는 연체금을 징수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223호, 2023. 1. 17. 공포, 2023. 7. 18. 시행)됨에 따라 법률과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총리령 제1805호, 2022. 5. 11. 공포 및 시행) 개정에 따른 대부 관련 서식의 정비사항을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대부 신청 조문 신설 및 서식 정비(안 제18조 및 별지 제23호, 제24호 서식)

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 정비사항을 반영하여 민원24 홈페이지 이용 안내 삭제 등 문구 정비

나. 이자가산 등 환수 관련 규정 개정에 따른 환수금 분할납부 신청서식 신설(안 제37조의5 및 별지 제48호 서식 신설)

다. 보훈특별고용 관련 서식 및 민원 신청 시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정비(별지 제14호의3, 제46호, 제47호의3 서식)

라. 신상변동시 서류제출 의무 규제 일몰 해제(안 제38조 제1항 삭제)

2022년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결과 주기적으로 검토할 규제 사항이 아닌 것으로 보아 일몰 해제 결정됨에 따른 후속조치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부예정자로 통지받은”을 “대부금 지급 신청을 하려는”으로, “대부금지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대부금지급신청서”로,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서류”로,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을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으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같은 항 제7호가목 중 “1통”을 “1부”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경우에만”을 “경우만”으로, “1통”을 “1부”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서류 1통”을 “구비서류 1부”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확인하여야”를 “확인해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을 “건축허가서 또는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으로, “첨부하도록 하여야”를 “직접 제출하도록 해야”로 한다.

- ① 영 제41조제1항에 따라 대부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23호서식의 대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무주택증명서류(주택대부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이미 보관 중인 자료를 통하여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37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7조의5(환수금 분할납부 신청) 영 제61조의2제6항에 따라 환수금분할납부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48호서식의 환수금 분할납부 신청서를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38조제1항을 삭제한다.

별지 제14호의3서식, 별지 제23호서식, 별지 제24호서식, 별지 제46호서식 및 별지 제47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8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7조의5 개정 규정은 2023년 7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부조직법 제35조에 관한 경과조치) 별지 제24호 서식 중 “국가보훈부장관”은 법률 제19228호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 전일까지는 “국가보훈처장”으로 본다.

기관명

수 신

(경유)

제 목 취업지원 대상자 선정결과 통보서 송부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2항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선정결과를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취업지원 대상자 선정결과 통보서					
취업지원 실시기관	기관명				
	기관장명			전화번호	
	소재지				
선정 대상자 (합격자)	보훈 번호	특수임무유공자 와의 관계	성명	생년월일	비고
	계	명			

※ 고용해야 할 인원보다 적은 취업지원 대상자를 선택하여 통보한 경우(선정대상자가 없는 경우 포함) 미선정 또는 불합격 사유를 별도로 첨부해주시기 바랍니다. 끝.

발 신 명 의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기안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대부 신청서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25일	
신청인	대상구분	[] 사망자 [] 행방불명자		보훈번호			
		[] 부상자 [] 공로자					
	성명			생년월일(성별)		()	
	주소			전화번호			
대부 신청	대부종류	[] 주택구입 [] 주택신축 [] 주택임차 [] 주택개량					
		[] 농토구입 [] 사업 [] 생활안정 [] 대지구입					
	희망금액	만원		담보	[] 부동산 [] 보훈급여금 [] 신용 [] 기타		
주거상황	거주실태	[] 자가 [] 전세 [] 월세 [] 기타					
	무주택기간	년 월 (세대원 명)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부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보훈청장
보훈지청장 귀하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신청인 제출서류	1. 무주택증명서류(주택대부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2.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이미 보관 중인 자료를 통하여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본인정보 제공요구	1.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정보 제공 요구 동의

본인은 위의 민원신청과 관련하여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위의 본인정보 제공요 구 항목의 행정정보에 대하여 위의 민원처리기관으로 제공할 것을 요구하며, 민원처리기관의 담당자가 정보요구 대상기관에서 제 공하는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를 전자적으로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정보요구 대상기관 : 법원행정처)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유의사항: 본인이 위 사항에 대해 요구 등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요구 등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 비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대부 여부 결정	→	대부계약
신청인		관할 보훈(지)청 제주특별자치도		관할 보훈(지)청 제주특별자치도		관할 보훈(지)청 제주특별자치도		관할 보훈(지)청 제주특별자치도 신청인

확인

담당	주무	과장	(지)청장
----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대부금지급 신청서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대상구분 [] 사망자 [] 행방불명자 [] 부상자 [] 공로자	보훈번호	
	성명	생년월일(성별) ()	
	주소	전화번호	
신청 종류	대부종류	대부금	
	대부금 사용목적	본인부담금	
	담보 [] 부동산 [] 보훈급여금 [] 신용 [] 기타		
부동산 담보내역	소재지(지목, 면적)	현재 시가	
연대 보증인	성명	전화번호	
	보증구분 [] 재산 [] 소득 [] 직업 [] 기타	보증내역 (직장명)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4조제48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부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보훈청장 보훈지청장 귀하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신청인 제출서류	1. 농토구입대부: 매매계약서 사본 1부 2. 주택구입대부: 매매계약서 사본 1부 3. 대지구입대부: 매매계약서 사본 1부 4. 주택신축대부: 건축신고필증 사본 1부 5. 주택개량대부: 대수선허가서 또는 건축신고필증 사본 1부 6. 주택임차대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7. 사업대부: 사업계획서, 사업운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사업자등록증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고, 제출할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및 담보물의 종류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구비 서류 각 1부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농토구입대부: 토지등기사항증명서 및 지적도 2. 주택구입대부 또는 주택신축대부: 토지등기사항증명서,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주택구입대부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건축허가서(주택신축대부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서(공동주택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3. 대지구입대부: 토지등기사항증명서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서 4. 주택개량대부: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또는 건축물대장 및 건축허가서 5. 주택임차대부: 건물등기사항증명서 6. 사업대부: 사업자등록증(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본인은 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건축허가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해당 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생계지원금 분할 지급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아니하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신청인의 보훈번호	특수임무유공자와의 관계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지급방법	[] 계좌입금 [] 현금지급 [] 압류금지 전용계좌			
예금계좌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5조의2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3에 따라 생계지원금 분할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보훈청장
보훈지청장 귀하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입금계좌 확인정보(통장사본)	수수료 없음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생계지원금 지급신청과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위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항목의 행정정보에 대하여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 본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생계지원 지급 신청이 안 된 경우에는 별지 제47호서식의 생계지원금 지급 신청서를 먼저 제출해야 합니다.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서 작성 신청인	→	접수 관할 보훈(지)청	→	지급(예금계좌 입금 또는 현금지급) 관할 보훈(지)청
---------------	---	-----------------	---	----------------------------------

확인

담당	주무	과장	(지)청장
----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생계지원금 지급 신청서

※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신청인의 보훈번호	특수임무유공자와의 관계		성명	
	주소 (전화번호 :)				
부양의무자 ¹⁾	신청인과의 관계	성명	생년월일	직업	동거 여부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5조의2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4제1항에 따라 생계지원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보훈청장
보훈지청장 귀하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부양의무자: 신청인에 대하여 부양 의무가 있는 배우자, 부모, 자녀 및 그 배우자를 말합니다.

신청인 제출서류	1. 본인 및 그 부양의무자에 대한 별지 제5호의2서식의 소득·재산 신고서 1부 2. 본인 및 그 부양의무자에 대한 별지 제5호의3서식의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1부 3.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이미 보관중인 자료를 통하여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행정정보 공동이용	1.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2.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3.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증명서 4. 장애인증명서 5. 임야대장 6. 토지대장 7. 토지등기사항증명서 8. 개별공시지가확인서 9. 건축물대장 10. 건물등기사항증명서 11. 주택가격확인서 12. 선박원부 13. 자동차등록원부 14. 사업자등록증명 15. 임대사업자등록증 16. 휴업사실증명 17. 폐업사실증명 18. 소득금액증명 19. 납세사실증명 20. 납세증명서 21. 지방세세목별과세(납세)증명서 22. 공무원연금내역서 23. 산재보험급여지급확인원 24.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 25.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26. 자동차등록증 27. 차상위계층확인서 28. 장애인연금장애수당장애이동수당수급자확인서 29.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30. 자활근로자확인서 31. 임금계좌 확인정보(통장사본)
	본인정보 제공요구	32.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정보 제공 요구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 1.본인은 생계지원금 지급신청과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위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항목의 행정정보에 대하여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 본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2.본인은 생계지원금 지급신청과 관련하여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위의 본인정보 제공요구 항목의 행정정보에 대하여 위의 민원처리기관으로 제공할 것을 요구하며, 민원처리기관의 담당자가 정보요구 대상기관에서 제공하는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를 전자적으로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정보요구 대상기관 : 법원행정처)
※ 동의하지 않을 경우 본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양의무자 (서명 또는 인)

부양의무자 (서명 또는 인)

부양의무자 (서명 또는 인)

부양의무자 (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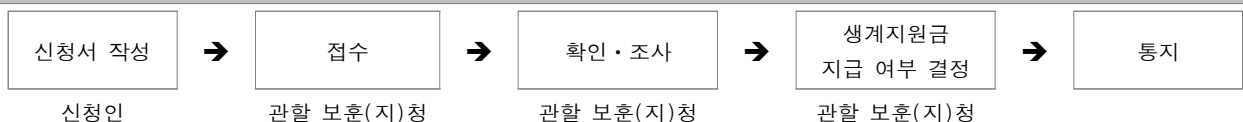
부양의무자 (서명 또는 인)

부양의무자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1.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5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3제4항에 따라 지원 여부의 결정에 필요한 서류 또는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조사·질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에는 생계지원금 지급 신청을 각하하거나 지급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2. 관할 지방보훈청장, 보훈지청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7조의4제3항에 따라 생계지원금 지급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생계지원금 지급 여부에 관한 사항을 통지합니다. 다만, 소득·재산 등의 조사에 시간이 걸리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3. 생계지원금수급희망자 및 그 부양의무자는 소득 및 재산사항을 성실히 신고해야 합니다.

처리절차



확인

담당	주무	과장	(지)청장
----	----	----	-------

환수금 분할납부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대상구분		보훈번호		
	특수임무유공자와의 관계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환수금 분할 신청 내용	총 환수금액	일시납부 금액	분할납부 신청 금액	분할납부 횟수	월 납입일
	원	원	원	회	일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의2제6항 각 호 외의 후단 부분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5에 따라 환수금의 분할납부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이
 호
 지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보훈청장
보훈지청장 귀하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

1. 작성방법

가. 환수금 분할신청 내용의 ①총 환수금액란에는 현재 남아 있는 금액, ②일시납부 금액란에는 현재 한꺼번에 납부할 수 있는 금액, ③분할납부 신청 금액란에는 분할납부 희망하는 금액을 기재합니다. (①총 환수금액 = ②일시납부 금액 + ③분할 납부 신청 금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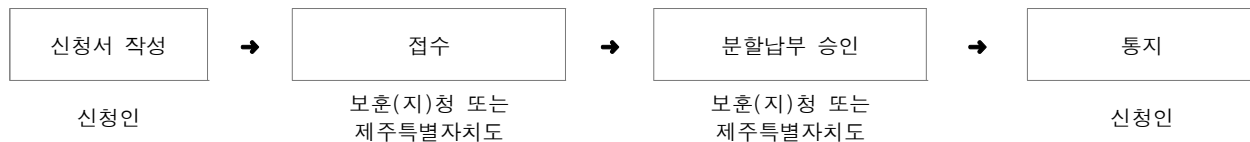
나. 환수금 분할 신청내용의 분할납부 횟수란에는 아래의 기준을 참고하여 희망하는 분할 횟수를 기재합니다.

- 반납해야 할 금액이 ①1천만원 미만인 경우: 20회 이내, ②1천만원 이상 2천만원 미만인 경우: 40회 이내, ③2천만원 이상인 경우: 60회 이내

2. 유의사항: 분할납부를 승인받은 후 분할납부금을 3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에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의2제8항에 따라 분할납부 승인을 취소하고, 환수금과 연체이자를 한꺼번에 환수할 수 있습니다.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한글

담당	주무	과장	(지)청장
----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8조(대부의 신청 등) ① 영 제41조제1항에 따른 대부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다.	제18조(대부의 신청 등) ① 영 제41조제1항에 따라 대부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23호서식의 대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무주택증명서류(주택대부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이미 보관 중인 자료를 통하여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영 제41조제3항에 따라 대부 예정자로 통지받은 사람은 별지 제24호서식의 대부금지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대부 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 대부금 지급 신청을 하려는 ----- -----대부금지급신청서----- ----- -----서류----- ----- 관할 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 --- 제출해야 -----.
1. 농토구입대부: 매매계약서 사본 1통	1. ----- -- 1부

2. 주택구입대부: 매매계약서 사
본 1통

3. 대지구입대부 : 매매계약서
사본 1통

4. 주택신축대부: 건축신고필증
사본 1통

5. 주택개량대부: 대수선허가서
또는 건축신고필증 사본 1통

6. 주택임차대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1통

7. 사업대부: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사업계획서 1통

나. 사업운영을 증명할 수 있
는 서류(사업자등록증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
우로서 해당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
다) 1통

다. 담보물의 종류에 따라 국
가보훈처장이 정하는 서류
1통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전
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
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
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2. -----
-- 1부

3. -----
-- 1부

4. -----
----- 1부

5. -----
----- 1부

6. -----
-- 1부

7. -----
가. ----- 1부

나. -----

-----경우만-----
--- 1부

다. -----
-----구비서
류 1부

③ -----

그 내용을 <u>확인하여야</u> 한다. 다만, 신청인이 <u>확인</u>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u>첨부하도록 하여야</u> 한다. 1. ~ 6. (생 략) <u><신 설></u> 제38조(규제의 재검토) ① 국가보훈처장은 제5조에 따른 신상 변동신고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생 략)	----- <u>확인해야</u> -----. 다만, 신청인이 건축허가서 또는 사업자등록증의 <u>확인</u>에 동의하지 않는 -----<u>직접</u>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1. ~ 6. (현행과 같음) 제37조의5(환수금 분할납부 신청) 영 제61조의2제6항에 따라 환수금분할납부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48호서식의 환수금 분할납부 신청서를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38조(규제의 재검토) <u><삭 제></u> ② (현행과 같음)
---	--